

2026년 모두의 창업 글로벌 재외국민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공고 주요 질의응답

2026. 8.

[사업 신청 및 문의처]

1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답변

- ☞ 사업 신청은 **K-스타트업 누리집(홈페이지)**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 신청 완료 여부 확인은 K-스타트업 누리집 → '사업 신청관리'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* (참고) 사업 신청을 위해 K-startup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. 해당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, 접수 마감일 이전에 회원가입 진행을 권장드립니다.

참고 사항

- * 신청 경로 :
-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K-스타트업 접속 | 온라인 사업 신청 | 검색창에 'k-startup.go.kr' 또는 '창업지원포털' 검색 |
| ② 사업신청 | K-스타트업 로그인 | 사업공고(모집중) 공고선택 '접수 바로가기' 클릭 |
| ③ 사업 신청 확인 | K-스타트업 로그인 | 사업 신청관리 사업 신청 사업 신청내역조회 |

2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나요?

답변

- ☞ **불가능합니다.** 사업 신청은 K-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. 사업 신청·접수는 **18:00 정각**에 종료되며, 제출 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신청·접수가 완료됩니다.
- ※ (유의사항) 반드시 '제출 완료버튼을 클릭해야 신청접수가 완료' 됩니다

3 업무 담당자 ID로 사업을 신청해도 되나요?

답변

- ☞ **불가능합니다.** 사업 신청 시에는 반드시 **창업기업 대표자가 본인 ID**를 통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.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, 평가대상에서 제외, 탈락 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4 사업 신청 시 과제명은 무엇을 쓰나요?

답변

- ☞ 사업 아이템(아이디어)을 기입하시면 됩니다. 과제명은 창업 아이템(제품)이 한눈에 표현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- * (예시) OO기술이 적용된 OO기능의(혜택을 제공하는) OO제품·서비스

5	소속 직원이 없는 경우, 사업 신청 시 인력정보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?
답변	☞ 소속 직원이 없으신 경우 공란으로 두시고, 저장 → 제출 완료를 클릭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.
6	개명한 이름으로 실명인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답변	☞ 개명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. 해당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화면에 표시된 이름이 개명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☞ 위의 내용이 정확하다면 실명인증을 연계하는 SCI평가정보v 으로 유선 연락하여 시스템에 개명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름 경우 정정요청하여 정정이 완료된 이후에 실명인증을 다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* (참고) 실명인증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 사항은 ☎(국번없이)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.
7	신청지역은 1개만 선택해야 하나요?
답변	☞ 네, 그렇습니다. 신청자 본인이 사업을 수행할 신청지역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·접수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한 선택 부탁드립니다.
8	사업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?
답변	☞ 시스템과 관련한 문의는 ☎(국번없이)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해주시기 바라며, 사업별 신청 자격 및 요건 등에 대한 문의는 모집 공고문에 기재된 유선 또는 K-스타트업 상담하기, 이메일 등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10	사업 신청과 관련한 시스템 매뉴얼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?
답변	☞ K-스타트업 누리집 접속 후 고객센터에 있는 온라인 매뉴얼 탭에서 「창업 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(PMS) 사용자 매뉴얼」 확인이 가능합니다. * (참고) 사업 신청 전, 시스템(PMS) 이용 매뉴얼 숙지를 권장드립니다.
참고 사항	* 경로 : K-Startup — 고객센터 — 온라인 매뉴얼 — 창업사업 매뉴얼 — 시스템 매뉴얼 (창업자) — 매뉴얼 다운로드

[신청자격]

1

현재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 포함되어 있는 경우,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답변

☞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면 사업 신청이 불가하며,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유무를 확인하므로 공고일 이후 전액 변제하여도 사업 신청은 불가합니다.

* (참고) 임금 체불사업주 해당 여부는 '고용노동부 누리집(<https://www.moel.go.kr>) 내 체불사업주 명단공개'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참고 사항

* 경로 : 고용노동부 누리집 - 정보공개 - 체불사업주명단공개 - 체불사업주명단조회

2

개인적인 채무가 있어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답변

☞ 채무의 경우, 신청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(기업)를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. 다만, 접수마감일까지 아래의 예외 사항에 해당되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참고 사항

* 예외사항 :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예외 대상

-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
-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-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
-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 · 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 을 받은 자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(기업) 예외 대상

-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
-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-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(기업)

- 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
-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
-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(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)

3

**공동대표(A대표, B대표) 중 A 대표자가 국세 체납 중입니다.
B 대표자로 사업 신청 시 요건검토를 통과할 수 있나요?**

답변

☞ 불가합니다.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 '자격요건 검토' 단계에서 공동(각자)대표, 전원에 대한 신청 자격을 검토하고 있으며, 선정 이후에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4

사업 신청 시 나이 제한이 있나요?

답변

☞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. 다만 사업별로 자격요건이 다르니 사업신청자격 세부 정보는 모집 공고문의 신청 자격 및 요건 항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5

현재 R&D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데,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답변

☞ 가능합니다. 연구개발사업은 창업지원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동 사업의 신청과 수행이 가능합니다.

6

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?

답변

☞ 본 사업은 '재외국민'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가 필수 조건입니다. 한국 국적을 유지 중인 영주권자는 지원 가능하나, 미국 시민권자(미국 국적자)는 제외됩니다.

7

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한지?

답변

☞ 지원 가능합니다. 다만, 외국인이 대표자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, 본 사업의 신청 주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.

8

현재 다른 지원사업을 받고 있습니다. 중복해서 지원이 가능할까요?

답변

☞ 창업기업은 '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글로벌 창업 지원사업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동시수행(협약체결) 불가합니다.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은 공고문 [참고3]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.

☞ 국외 창업기업 요건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2의2.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국외 창업 요건을 준용하고, 사업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설립한 기업을 뜻합니다.

[국외 창업 요건] ※ **아래 필수요건이 “모두” 충족되어야 함**

-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외법인
-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할 것
-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최대주주* 또는 최대출자자의 지위를 가질 것
 - * 의결권 있는 주식을 포함한 모든 발행 주식에 대하여 최대주주일 것

답변

[국외 창업기업 범위] ※ **국외 창업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①, ② 중 1개 충족**

- ① 대한민국 내에 모회사 또는 자회사 법인이 있고, 국내 법인과 국외창업기업 간 사업적 연관성*을 가질 것
 - * 국내 법인과 국외 창업기업 상호 간에 물품 또는 용역 등 상업상 거래를 하는 것
 - (모회사 법인) 국외 창업 요건에 따라 국외 창업기업을 설립한 국내법인
 - (자회사 법인) 개인이 국외 창업한 경우, 해당 국외 창업기업이 설립한 국내 법인(국외 창업기업이 국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보유)
- ② 대한민국 내에 법인이 없는 경우, 대한민국 내에 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을 설치·운영하고 상시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할 것

[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]

1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한글 문서(HWP)로 작성해야 하나요?

답변

☞ 아닙니다. 워드(Microsoft Word)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. 다만, 모집공고문과 함께 안내드린 동 사업 전용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 그 외 양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,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※ (주의) 전년도 사업계획서, 타 사업 사업계획서, PPT 양식의 사업계획서 등은 제출 불가하며,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2 사업계획서 분량의 제한이 있나요?

답변

☞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은 8페이지를 넘지 않아야 하며, K-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업로드할 수 있는 용량(30MB)이 제한됨에 따라 최대 업로드 용량 이내에서 작성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.

3 사업계획서 제출 시 한글파일을 PDF로 변환하여 제출해도 되나요?

답변

☞ 사업계획서는 제출하시면 PDF 형식으로 자동 변환됩니다.

4 사업계획서 작성 시 이미지를 삽입해도 되나요?

답변

☞ 사진, 표, 그래프 등 모두 삽입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사업계획서를 업로드할 수 있는 용량(30MB)이 제한되어 있으니 고화질의 사진을 과도하게 삽입하는 것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.

5 사업계획서 양식을 변경해서 제출해도 되나요?

답변

☞ 사업계획서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. 모집 공고문과 함께 안내드린 사업계획서의 목차, 세부 항목을 임의로 변경 및 삭제하는 경우 평가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니,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[사업비]

1 선정 전 집행한 인건비를 협약체결 이후 소급받을 수 있나요?

답변

☞ 불가합니다. 사업화 자금은 **협약 기간 내** 주관기관의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된 사업비에 한해 집행이 가능합니다.(창업기업에 한해 인건비 지급 가능)

2 사업비 집행 비목 중 비목 간의 비율도 정해져 있나요?

답변

☞ 그렇지 않습니다. 비목 간의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필요성, 금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계상하시기 바랍니다.

3 노트북, 모니터 등 자산성 아이টে를 구매가능한가요?

답변

☞ 불가합니다. 예비창업자는 여비, 지급수수료 항목으로만 집행 가능하며, 창업기업은 인건비, 여비, 지급수수료 항목으로만 집행 가능합니다.
* 지급수수료 : 전시회 참가비, 통번역비, 운반비, 보험료, 보관료, 법인설립비, 차량임차비, 회계감사비, 광고선전비 등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소요되는 비용

4 사업 수행 후 정부지원사업비가 남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?

답변

☞ 협약종료 후에는 잔여 사업비를 전액 국고로 반납하셔야 합니다.

5 총 사업비는 어떻게 구성되나요?

답변

☞ 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와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로 구성되며, 창업기업은 일정부분 자기부담사업비를 부담해야 합니다. 참고로 예비창업자는 자기부담 사업비가 없습니다.

정부지원사업비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	
	현금	현물
총 사업비의 70% 이하	총 사업비의 10% 이상	총 사업비의 20% 이하

6

자기부담사업비가 무엇인가요?

답변

☞ 자기부담사업비는 총 사업비에서 창업기업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말합니다. 이중 현물은 인건비(창업기업 본인 및 기존 임직원), 사용 중인 사무실 임차비, 보유자재 등으로 부담이 가능합니다.

7

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집행방식이 왜 다른가요?

답변

☞ 예비창업자는 아직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설립 전으로,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사업비의 직접적 집행에 제약이 있습니다. 따라서, 원활한 창업 준비를 돕기 위해 예비창업자께서 선집행 후 국내 계좌로 사후 입금해드리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.

8

창업활동비는 나중에 상환하거나,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?

답변

☞ 아닙니다. 창업활동비는 정부 출연금 기반의 보조금으로, 상환 의무는 없습니다. 다만, 창업활동비는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, 증빙이 미비한 경우 등에는 사후 지급이 되지 않거나, 사업비 환수 및 최대 5배인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, 사업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하셔야 합니다.

[평가 · 선정]

1 신청을 완료했습니다. 평가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?

답변

☞ 서류평가, 발표평가 결과는 단계별 평가 종료 후 통과자를 대상으로 신청하신 창업진흥원, 주관기관 또는 AC에서 개별 안내(문자 또는 이메일)를 드립니다.

참고 사항

* 평가절차 :

① 요건검토

신청 자격 및 요건
충족 여부 등 검토



② 서류평가

선정 규모의
1.5배수 내외 선발



③ 발표평가

프로그램 적정성
등 발표 (20분 이내)



④ 최종 선정

심의를위원회를 통해
최종 선정 확정

2 정부지원사업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?

답변

☞ 정부지원사업비는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자금 소요 및 조달계획 및 창업기업 평가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. 다만 신청하신 사업비를 초과하여 최종 사업비가 배정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3 평가 기준이 있나요?

답변

☞ 창업아이템(아이디어) 개발 동기 등 문제인식부터 해결방안, 실현가능성, 성장전략, 팀 및 글로벌 역량, 현지적합성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. 평가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공고문의 '평가지표'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4 평가 단계에서 사업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?

답변

☞ 불가합니다. 접수 마감일 이후 사업계획서 수정은 불가합니다.

5 선정평가는 누가 진행하나요? 꼭 영어가 필수적인가요?

답변

☞ 선정평가는 현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할 현지 액셀러레이터가 직접 서류 및 발표 평가를 진행합니다. 이 때문에, 서류 및 발표평가는 모두 영어를 기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. 현지 액셀러레이터가 평가하는 이유는 특화분야에 가장 잘 맞는 기업을 선발하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.